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서명국은,

촉탁서의 전달과 집행을 촉진시키고 서명국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조정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하고,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상호 간의 사법공조를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여,

이러한 취지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장

촉탁서

제1조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체약국의 사법 당국은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촉탁서로써 증거취득 또는 그 밖의 사법적 처분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촉탁서는 개시되었거나 또는 개시될 예정인 사법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증거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기타 사법적 처분”이라는 표현에는 재판상 서류의 송달, 판결이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영장의 발부, 임시조치 또는 보호조치 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사법 당국으로부터 촉탁서를 수령하고, 이를 집행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업무를 맡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각국은 자국법에 따라서 중앙당국을 조직한다.

촉탁서는 집행국의 기타 당국을 경유함이 없이 집행국의 중앙당국으로 송부된다.

제3조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촉탁 당국 및 촉탁 당국이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집행할 수탁 당국
2. 소송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증거가 요청되는 소송절차의 성격 및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취득할 증거 또는 이행할 그 밖의 사법적 처분. 적절한 경우, 촉탁서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
5. 신문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
6. 신문받을 자에게 할 질문 또는 신문이 이루어질 소송물에 관한 설명
7. 검사될 서류, 그 밖의 부동산 또는 동산
8. 증거가 선서 또는 서약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요건 및 사용될 특별한 형식
9. 제9조에 따라 준수되는 특별한 방식 또는 절차

촉탁서에는 또한 제11조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인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4조

촉탁서는 이를 집행할 수탁 당국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그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제3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영어나 불어로 작성된 촉탁서 또는 영어나 불어로 번역된 촉탁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공용어가 두 가지 이상이고 국내법상의 이유로 한 가지 공용어로 된 촉탁서를 자국의 전 영역에서 접수할 수 없는 체약국은, 선언으로써 자국의 특정 영역에서의 집행을 위하여 촉탁서 또는 그 번역문에 사용할 언어를 지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선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되는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은 촉탁국이 부담한다.

체약국은 선언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언어 이외의 언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언어로 작성된 촉탁서는 그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될 수 있다.

촉탁서에 첨부되는 모든 번역문은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선서한 번역자 또는 각국에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

제5조

중앙당국은 촉탁이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촉탁서에 대한 이의를 명시하여 이를 송부한 촉탁국의 당국에 신속하게 통지한다.

제6조

촉탁서를 송부받은 당국에 이를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촉탁서는 자국법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국 내 당국에 지체 없이 송부되어야 한다.

제7조

촉탁 당국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그리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촉탁 당국에 소송절차가 진행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촉탁국의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통지는 당사자나 그들의 대리인에게 직접 송부되어야 한다.

제8조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촉탁 당국의 법관이 촉탁서의 집행 시에 출석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언국이 지정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사전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

제9조

촉탁서를 집행하는 사법당국은 준수할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자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그것이 집행국의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국내의 관행·절차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특별한 방식 또는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촉탁 당국의 요청에 따른다.

촉탁서는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제10조

촉탁서를 집행함에 있어서 수탁 당국은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하며, 그러한 강제력은 자국 당국이 발한 명령 또는 국내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행한 신청을 집행함에 있어 국내법이 정하는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촉탁서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1.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2. 촉탁국의 법에 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있고, 그 특권이나 의무가 촉탁서에 명시되거나 수탁당국의 발의에 따라 촉탁 당국이 그 특권이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수탁 당국에 확인하여 준 경우

체약국은, 그 밖에, 선언에서 명시한 범위에서 촉탁국 및 집행국 외의 국가들의 법에 의한 특권 및 의무를 존중할 것이라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촉탁서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집행국에 있어서 촉탁서의 집행이 사법부의 직무범위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수신국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가 이를 집행함으로써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국이 국내법상 소송물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집행국의 국내법이 그 사안에 대하여 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촉탁서의 집행을 입증하는 서류는 촉탁 당국이 이용한 것과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수탁 당국이 촉탁 당국에 송부한다.

촉탁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촉탁 당국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한다.

제14조

촉탁서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성격의 세금이나 비용도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국은 촉탁국에 대하여 전문가 및 통역인에게 지불한 보수, 그리고 제9조

제2문에 의하여 촉탁국이 요청한 특별한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수탁국의 법이 당사자에게 스스로 증거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수탁 당국이 독자적으로 촉탁서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 당국은 촉탁 당국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집행할 적당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의를 구할 때 수탁 당국은 이러한 절차에서 발생하게 될 대략의 비용을 적시한다. 촉탁 당국이 동의를 하는 경우 촉탁 당국은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상환하여야 하나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촉탁 당국은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

제15조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체약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은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직무수행 지역 안에서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체약국은 자신이 지정한 적절한 당국에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또는 그를 대신한 자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6조

체약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은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직무수행 지역에서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권한 있는 당국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였을 것, 그리고
2.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허가에서 명시한 조건을 준수할 것

체약국은 자신의 사전허가 없이 이 조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7조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하여 수임인으로 정당하게 선임된 자는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다른 체약국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한쪽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증거조사가 실시될 국가에서 지정한 권한 있는 당국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였을 것, 그리고

2.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허가에서 명시한 조건을 준수할 것

체약국은 자신의 사전허가 없이 이 조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8조

체약국은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증거조사의 권한이 부여된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수임인이 강제력에 의하여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선언국이 지정한 권한 있는 당국에 적절한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선언국은 부과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선언에 포함시킬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그 당국은 적절한, 그리고 자국법에 의하여 국내소송절차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된 모든 강제력을 사용한다.

제19조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언급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또는 제18조에 언급된 신청을 허가 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특히 증거조사 실시의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권한 있는 당국은 증거조사 실시의 시간, 일자 및 장소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당국의 대표는 증거조사 실시에 출석할 권한이 있다.

제20조

이 장의 어떠한 조문에 의한 증거조사에 있어서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다.

제21조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수임인이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증거조사실시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1. 그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위 각 조문에 따라 부여된 허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모든 종류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선서를 시키거나 서약을 받을 권한이 있다.

2. 어떠한 자에 대한 출석 또는 증거제출촉탁서는, 그 수취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국가의 국민이 아닌 한,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또는 그러한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3. 촉탁서에서는 그가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며, 제18조에 의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는 출석 또는 증거제출이 강제되지 아니한다는 것도 통지한다.

4.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의 준거법에서 규정한 방식이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5. 증거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11조에 포함된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 및 의무를 원용할 수 있다.

제22조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의 시도가 증거제출자의 거부로 인하여 실패하였다는 사실은 이후 제1장에 따른 증거조사의 신청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반규정

제23조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보통법 국가에서 통용되는 기일 전 서류개시절차의 목적으로 작성된 촉탁서를 집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제24조

체약국은 중앙당국 외에 기타 당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타 당국에 대해서는 그 권한 범위를 정한다. 그러나 촉탁서는 모든 경우에 중앙당국으로 송부될 수 있다.

연방국가는 둘 이상의 중앙당국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

둘 이상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은 그러한 법체계 중 하나의 당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촉탁서를 집행할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

제26조

체약국은 헌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경우 촉탁서의 집행과 관련하여 증거제출자의 출석을 강제하는데 필요한 영장송달의 수수료 및 비용, 그러한 자의 출석비용 및 증거의 사본비용의 상환을 촉탁국에 청구할 수 있다.

어느 국가가 제1문에 따라 청구를 한 경우 다른 체약국은 그 국가에 유사한 수수료 및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이 협약의 규정은 체약국의 다음 행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1. 촉탁서가 제2조에 규정된 경로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사법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
2.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이행되도록 허용하는 것
3.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방식 이외의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

제28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다음 각 호를 폐지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1. 촉탁서의 전달 방식에 관한 제2조의 규정
2. 사용될 언어에 관한 제4조의 규정
3. 촉탁서의 집행 시 법관의 출석에 관한 제8조의 규정
4. 증거제출을 거부할 증인의 특권 및 의무에 관한 제11조의 규정
5. 집행된 촉탁서의 촉탁 당국으로의 회송 방식에 관한 제13조의 규정
6.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제14조의 규정

7. 제2장의 규정

제29조

1905년 7월 17일과 1954년 3월 1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민사절차에 관한 협약들 중 어느 하나 또는 양자의 당사국이기도 한 이 협약의 당사국들 간에 있어서 이 협약은 상기협약들의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대체한다.

제30조

이 협약은 1905년 협약 제23조 또는 1954년 협약 제2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1905년 협약 및 1954년 협약의 당사국들 간의 보조협정들은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약의 체약국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협약들이 이 협약의 규율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 협약들을 폐지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어느 국가든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4조제2문과 제2장의 규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할 수 있다. 이 이외의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각 체약국은 언제든지 자국이 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유보는 철회의 통지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어느 국가가 유보를 한 경우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는 유보국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

어느 국가든지 시기에 관계없이 선언을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35조

체약국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 이후에 네덜란드 외무부에 제2조, 제8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당국의 지정을 통지한다.

또한 적절한 경우, 체약국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한다.

1.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외교관 및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에 있어 각각 통지를 수령하고, 필요한 허가를 내주며, 요청되는 원조를 제공할 당국의 지정
2. 제17조에 따라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에 있어 필요한 허가를 내줄 당국 및 제18조에 규정된 원조를 제공할 당국의 지정
3.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선언
4. 위 지정 및 선언의 철회 또는 수정
5. 유보의 철회

제36조

이 협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체약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분쟁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37조

이 협약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제11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한다.

제38조

이 협약은 제37조제2문에 규정된 세 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추후에 비준한 각 서명국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39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이거나 유엔 또는 유엔의 전문기구의 회원국이거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으로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제11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하지 아니한 국가는 제38조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한다.

이 협약은 가입국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가입은 가입국과 그 가입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체약국간의 관계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한 선언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한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 체약국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 협약은 가입국과 그 가입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국가 간에 있어서는 수락선언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40조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자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영역 또는 그 일부에 이 협약을 확장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그 국가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용의 확장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영역에 대하여 협약은 전단에 규정된 통지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41조

이 협약은 추후에 이를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도 제38조제1문에 따라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다.

협약은 어떠한 폐기통고도 없는 경우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

폐기통고는 적어도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6개월 전까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지되어야 한다.

폐기통고는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한 영역에 국한될 수 있다.

폐기통고는 이를 통지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협약은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42조

네덜란드 외무부는 제37조에 규정된 국가 및 제39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 제37조에 규정된 서명 및 비준
2. 제38조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3. 제39조에 규정된 가입 및 그 발효 일자
4. 제40조에 규정된 확장 적용 및 그 발효 일자
5. 제33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지정, 유보 및 선언
6. 제41조제3문에 규정된 폐기통고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0년 3월 18일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서는 네덜란드 정부보관소에 기탁하고 그 인증등본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제11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각 국에 송부한다.